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 
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
(자치행정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68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제안이유

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공간을 활성화하고,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- 라.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사업(안 제4조)
- 마. 교육 및 홍보(안 제5조)
- 바. 사용신청 및 승인 등(안 제6조부터 제9조)
- 사.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등(안 제10조부터 제12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안은 우리구 금나래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  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
  - 안 제2조에서는 “커뮤니티센터”와 “지역”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
  -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
  - 안 제4조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관련 구민 및 단체·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
  - 안 제5조에서는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와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하여
  - 안 제6조에서는 시설 사용 신청 및 승인에 대하여
  - 안 제7조에서는 사용제한 및 승인 취소에 대하여
  -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
  -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하여
  -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

- 안 제11조에서는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대하여
- 안 제12조에서는 입장 및 행위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**제153조(사용료)**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##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**제40조(입장료 등의 징수)**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.

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9. 16.]

##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3. 3. 7.] [대통령령 제33321호, 2023. 3. 7., 타법개정]

**제46조(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)**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.  
<개정 2008. 2. 29., 2009. 12. 31., 2012. 3. 13.>

1.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·휴양시설·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
2.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3. 삭제 <2009. 12. 31.>